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 3. 11
-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유 태봉)

가. 제출이유

사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보건증진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65세이상 경로우대중 소지자에게 무료 진료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재)

- 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 대상에 65세이상 경로우대중소지자를 추가하여 노인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나.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행과 노인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송윤석 위원) : 현 보건소예산으로 늘어나는 노인을 모두 치료할 수 있으며, 현재의 인원으로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 답변(보건소장 김영호) : 정원 77명중 현원은 69명이며, 열심히 하면 현인원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보아서 안되면 그때 증원 요청을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제출일자 : 1994년 3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	---

개정이유

사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보건증진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

주요개정골자

65세이상 경로우대중 소지자에게 무료진료 확대(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 4464호) 제15조
- 보건소법(1991. 3. 8 법률 제4355호) 제8조제2항
- 의약 12451-3962(1993. 11. 26)호 : 지시공문

개정조례(안) : 별첨

예산조치필요성 : 예산조치불필요

